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11 선고 2021가단548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나희, 양이림

변론 종결 2021. 10. 21.

판결 선고 2021. 11.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3. 접수 제1023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는 2019. 1. 15.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44,720,000원(이후 136,72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을 2020. 1. 14.(이후 2022. 1. 13.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발행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136,720,000원을 대출받았다.

주식회사 B는 2021. 1. 14.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75,200,000원, 보증기한을 2022. 1. 13.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발행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75,2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1, 2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만일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과 그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및 기타 법적 절차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B는 2021. 2. 9.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B를 대위하여 2021. 3. 30. 기업은행에게 215,015,733원(=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38,647,752원 +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76,367,981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2,913,3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은 135,734,382원(= 대위변제금 138,647,752원 - 회수금 2,913,370원)이 남았고, 위 일부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638원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8. 31.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3. 접수 제10232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대환으로서 이루어진 신규대출의 법적 성질이 준소비대차가 아닌 경개로 인정되어 신규대출에 따른 채무가 종전대출에 따른 채무와 법적인 동일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환으로서 소멸한 종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다가 대환으로서 이루어진 신규 대출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람이 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신규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채권도 종전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채권의 범위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5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성립된 갱신보증의 경우에도 종전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의 범위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식회사 B는 2014년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75,6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 발행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고, 이후 위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은 수차례 연장되다가 원고는 2019. 1. 15. 위 신용보증서를 회수하기 위하여 다시 주식회사 B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75,600,000원, 보증기한을 2020. 1. 14.(이후 2021. 1. 14.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면서 기존의 신용보증서를 회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1. 14. 위

2019. 1. 15.자 신용보증서를 회수하기 위하여 다시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위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면서 기존의 2019. 1. 15.자 신용보증서를 회수하였다(갑 제1 내지 3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은 주채무의 변제기가 대환의 방법으로 연장됨에 따라 기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이른바 갱신보증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각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 체결의 원인이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각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6. 9. 접수 제65146호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갑 제9호증의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주식회사 B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현실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후인 2021. 2. 9. 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원고가 2021. 3. 30. 기업은행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주식회사 B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7226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62246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749,613,73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도 위 시가를 인정하고 있어, 이와 달리 위 시가가 472,278,609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반면 소극재산으로 합계 1,120,000,000원의 채무(= C에 대한 289,000,000원의 채무 + 기업은행에 대한 265,000,000원의 채무 + D에 대한 20,000,000원의 채무 + E에 대한 26,000,000원의 채무 + F조합에 대한 520,0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갑 제9 내지 11호증,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주식회사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가 주식회사 B와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손원락

별지